

■ **업무내용**

기계설비 : 건축물 · 플랜트 그 밖의 공작물에 급배수 · 위생 · 냉난방 · 공기조화 · 기계기구 · 배관설비 등을 조립 · 설치하는 공사  
 가스시설공사 1종 : 가) 가스시설시공(제2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  
 나) 도시가스공급시설의 설치 · 변경공사  
 다)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 · 집단공급시설 · 저장소시설의 설치 · 변경공사  
 라)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설치 · 변경공사  
 마) 저장능력 500kg 이상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설치 · 변경공사  
 바) 고압가스배관의 설치 · 변경공사

■ **등록기준**

1. 자본금

법인	개인
1.5억원 이상	1.5억원 이상

2. 기술능력

기계설비	<p>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나)에 따른 기술자격취득자 [기계설비법시행령 별표2 제1호가목1)부터 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를 1명 이상 포함해야 한다.</p> <p>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건축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p>
가스시설공사 1종	<p>가) 가스관계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1인 이상</p> <p>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토목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용접산업기사 또는 가스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1인 이상</p> <p>다)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1인 이상                      (1) 국가기술관리법에 따른 용접기능사·특수용접기능사 또는 배관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2) 가스관계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이고,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p>

★**기계설비**

기술사	기계, 건설기계, 건축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산업기계설비, 용접, 금속재료,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시공, 가스, 소음진동
기능장	배관, 기계정비, 판금제관, 용접, 금속재료, 위험물, 전기, 건축일반시공, 에너지관리, 가스
기사	일반기계, 건설기계설비, 건축설비, 공조냉동기계, 설비보전, 메카트로닉스, 용접, 금속재료, 전기, 전기공사, 건축, 에너지관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가스, 소음진동
산업기사	배관, 기계조립, 기계설계, 건설기계설비, 건축설비, 공조냉동기계, 정밀측정, 기계정비, 생산자동화, 판금제관, 용접, 금속재료, 위험물, 전기, 전기공사, 건축, 건축일반시공, 건축제도, 온수온돌, 에너지관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가스, 소음진동
기능사	배관, 기계가공조립, 전산용용기계제도, 공조냉동기계, 설비보전, 정밀측정, 기계정비, 생산자동화, 판금제관, 피복아크용접, 특수용접, 가스텅스텐아크용접, 이산화탄소가스아크용접, 금속재료시험, 위험물, 전기, 전산용용건축제도, 온수온돌, 에너지관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가스
기능사보	건축배관, 공업배관, 다듬질, 일반판금, 타출판금, 제관, 특수용접, 가스용접, 전기용접, 내선공사, 외선공사, 온수온돌, 구들온돌, 가스

## ★가스시설공사1종

기술사	가스,용접
기능장	가스,용접,배관
기사	가스,용접
산업기사	가스,용접,배관
기능사	가스,전기용접,배관

※가스시설시공업(제1종)에는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인정기능사, 한국열관리시공협회 양성교육이수자는 인정되지 않음  
 ※기술자격취득자는 상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하며, 「국가기술자격법」,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건설기술인은 제외한다.

### 3. 공제조합

2024.08.29 기준

업종	1좌당	자본금	CC등급 이상	C등급
기계가스설비공사업	1,092,000원	1.5억원	42좌 (45,864,000원)	46좌 (50,232,000원)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동일				

### 4. 시설·장비

사무실
사무실은 「건축법」 등 그 밖의 법령에 적합한 건물이어야 하며, 등록을 하려는 시·도 안에 있어야 한다
※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주거용건물 등 상시적으로 사무실로 이용하기 부적합한 건물 등록 불가
장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스시설공사1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밀시험설비</li> <li>내압시험설비</li> <li>자기압력기록계</li> <li>가스누출검지기</li> <li>공기호흡기 또는 송기식마스크</li> <li>볼트 및 암페어메타</li> <li>절연저항측정기(500V 1천MΩ) 그 밖의 측정기 (버니어캘리퍼스·내외경마이크로메타·초음파측정기·다이알게이지·도막측정기 등)</li> <li>각종 압력계</li> <li>표준이 되는 온도계</li> </ul> </li> </ul>

### 신규등록 소요기간

평균 30~45일 이내 소요